

특별공급 (신혼부부)

■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

구분	내용														
대상 및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시세에 거주하거나, 경상남도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 포함)인 무주택세대구성원(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*)으로서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* 단, 혼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.12.11.전에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고,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- 입주자처속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, 지역별 /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													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1.11.16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세대수의 50%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% 이하인 자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)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%(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)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 이하인 자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)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(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) ③ 남은 주택(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)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(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)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-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														
당첨자 선정방법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4.03.25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아래의 순서로 공급합니다. (신생아* 우선(일반) 공급 신설)</td> </tr> <tr> <td>신생아 우선공급 (15%)</td> <td>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(2세가 되는 날을 포함)의 자녀가 있고,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%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</td> </tr> <tr> <td>신생아 일반공급 (5%)</td> <td>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(2세가 되는 날을 포함)의 자녀가 있고,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</td> </tr> <tr> <td>우선공급 (35%)</td> <td>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%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</td> </tr> <tr> <td>일반공급 (15%)</td> <td>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</td> </tr> <tr> <td>소득기준 초과 / 자산기준 충족 30%(추첨제)</td> <td>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 초과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초과)자 중, 부동산가액(3.31억원)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내용	2024.03.25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아래의 순서로 공급합니다. (신생아* 우선(일반) 공급 신설)		신생아 우선공급 (15%)	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(2세가 되는 날을 포함)의 자녀가 있고,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%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	신생아 일반공급 (5%)	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(2세가 되는 날을 포함)의 자녀가 있고,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	우선공급 (35%)	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%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	일반공급 (15%)	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	소득기준 초과 / 자산기준 충족 30%(추첨제)	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 초과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초과)자 중, 부동산가액(3.31억원)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
	구분	내용													
2024.03.25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아래의 순서로 공급합니다. (신생아* 우선(일반) 공급 신설)															
신생아 우선공급 (15%)	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(2세가 되는 날을 포함)의 자녀가 있고,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%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														
신생아 일반공급 (5%)	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(2세가 되는 날을 포함)의 자녀가 있고,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														
우선공급 (35%)	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%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														
일반공급 (15%)	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														
소득기준 초과 / 자산기준 충족 30%(추첨제)	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 초과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초과)자 중, 부동산가액(3.31억원)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														
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제1순위 :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(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)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※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포함 ※ 재혼인 경우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(입양포함)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: 자녀가 없거나, 2018.12.11.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 -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(청원시) ② 미성년 자녀(태아를 포함한다) 수가 많은 자 ※ 재혼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·입양한 미성년자녀(전혼자녀)를 포함하되,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. ※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(전혼 배우자의 자녀)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(태아를 포함한다)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														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

소득구분	비율	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(2024년 적용)						
		소득금액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신생아우선공급, 우선공급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이하	~7,004,509원	~8,248,467원	~8,775,071원	~9,563,282원	~10,351,493원	~11,139,704원
	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 이하	~8,405,411원	~9,898,160원	~10,530,085원	~11,475,938원	~12,421,792원	~13,367,645원
신생아일반공급, 일반공급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40% 이하	~9,806,313원	~11,547,854원	~12,285,099원	~13,388,595원	~14,492,090원	~15,595,586원
	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	160% 이하	~11,207,214원	~13,197,547원	~14,040,114원	~15,301,251원	~16,562,389원	~17,823,526원
추첨공급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40%초과, 부동산가액 충족	9,806,314원~	11,547,855원~	12,285,100원~	13,388,596원~	14,492,091원~	15,595,587원~
	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	160%초과, 부동산가액 충족	11,207,215원~	13,197,548원~	14,040,115원~	15,301,252원~	16,562,390원~	17,823,527원~

유의사항
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 초과 시 일반공급 20%(상위소득) [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 초과~160% 이하)]을 선택하셔야 합니다.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추첨제 :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(3.31 억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
※ 본 서식은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정보제공을 하기위하여 제공되는 자료입니다. 그러나 인쇄 및 편집 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, 혼돈을 야기하는 경우 사업자체의 질의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본 서식을 근거로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·형사상 소송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